



금융거래 목적 확인서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오니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금융거래 목적 및 고객 기재사항에 따라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금융거래목적	
--------	--

고객확인사항 해당되는 사항에 "√"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구분	항목	예	아니오
공동	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접근매체(통장/카드/공인인증서/PIN/OTP 등)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②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, 대출 등의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대출·취업 등을 미끼로 접근매체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입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법인	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통장(카드)을 보관·전달·유통한 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여권 여행자증명서 소지자	① 국내에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)가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② 여권(여행자증명서) 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? (본국 신분증, 신용카드, 지로 등 공과금 영수증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③ 국내에 직업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부동산이 있습니까? (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, 재산세 영수증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※ 여권·여행자 증명서 소지자의 비대면 거래는 ①과 ②, ③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가능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된 적이 있는 고객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개설 목적이 명확하다고 은행이 인정한 경우에만 신규 가능합니다.

본 확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틀림없이 기재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

고객명(업체명)

(인/서명)